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57
------------	-------

발의연월일 : 2019. 4. 3.

발 의 자 : 우상호 · 신창현 · 이상현

송갑석 · 김병기 · 기동민

김영호 · 김영주 · 이동섭

이학영 · 설 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일부 별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별칙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재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안 제2조).
- 나. 발매이익금의 사용용도를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 다.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 라.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4조).
-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4) 유사행위 등을 홍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5)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유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재물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안 제32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승자투표 적중자에게”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승자를 적중시켜”를 “승리한 선수를 맞혀”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을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으로, “승자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개최에”를 “사업시행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6조(종전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를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제27조(종전의 제26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 중 “2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29조부터”를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9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 중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u>승자투표 적중자</u> (<u>勝者投票</u> 的中者)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1. ----- ----- ----- <u>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에게</u> ----- -----.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u>승자투표 적중자에게</u>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 ----- <u>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에게</u> ----- ---.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u>승자를 적중시켜</u>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u>자의</u>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3. ----- ----- <u>승리한 선수를 맞혀</u> ----- <u>사람의</u> ----- ----- ----- -----.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	4. ----- ----- -----

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승자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 · 6. (생 략)

제15조(발매수득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24조(유사행위 금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
-----사람에게-----
--

5. · 6. (현행과 같음)

제15조(발매이익금) ① -----

사업시행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유사행위 금지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
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
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
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
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
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
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p>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p> <p>1.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p>	<p>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p> <p>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p> <p>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p> <p>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 <p>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p>
--	---

2. 경주사업자

3. · 4. (생 략)

5.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행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 4. (현행과 같음)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삭 제>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별 칙)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p>제27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6조(별칙) ① ----- -----<u>7년</u> -----<u>7천만원</u>----- -----.</p>
<p>1. 제24조를 위반한 자</p>	<p>1. 제24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제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p>	<p>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p>	<p>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p>
<p>제31조(별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조(별칙) ----- ----- -----<u>5년</u> -----<u>5천만원</u>----- -----.</p>
<p>제32조(몰수와 추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p>	<p>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9조부터----- -----.</p>

<p>에는 병과가액(併科價額)을 추정한다.</p> <p>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p> <p>제34조(별 칙) <u>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u>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 ----- -----.</p> <p>법률 제16046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p> <p>제34조(별 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3년</u>----- -----<u>3천만원</u>----- -----.</p> <p>1. <u>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u> <u>자</u></p> <p>2. <u>제25조제1항을 위반한</u> 자</p>
--	---